



## 명예교수임용 규정

제 정 일	2007. 3. 1
개 정 일	2022. 1. 1
개정차수	9차
담당부서	행정지원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명예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자격) 명예교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 (개정 2019. 3. 1)

- ①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본교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
- ② (삭제 2022. 1. 1)

제 3조 (임용절차) ① 명예교수는 소속 학부(과)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 단, 학부(과)장 추천요건은 해당 학부(과) 교수회의에서 전임교원 과반수이상 출석 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. (개정 2013. 3. 1, 2021. 7. 1)

② 명예교수를 임명 제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- 1. 교육 및 활동에 관한 공적서 : 본인 (별지 1호 서식) (개정 2011.10. 1)
- 2. 명예교수 추천 의견서 : 학부(과)장 (별지 2호 서식) 및 학부(과) 회의록 (개정 2011.10. 1)
- 3.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서 : 학부(과)장 (별지 3호 서식) (개정 2011.10. 1)
- 4.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

③ (삭제 2021. 7. 1)

제 4조 (강의) ① 주당 최대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. (개정 2019. 3. 1)

② 강의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신설 2011.10. 1)

제 5조 (처우) 강의수당은 강사료의 2배를 지급한다. (개정 2019. 8. 1)

제 6조 (임용기간)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. (개정 2013. 3. 1, 2022. 1. 1)

제 7조 (임용취소) 명예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 취소 할 수 있다. (개정 2011.10. 1, 2021. 7. 1)

- ① 본교에 대한 명예훼손
- ② 명예교수로서의 적합지 않은 행위
- ③ (삭제 2011.10. 1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명예교수로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(신설 2011.10. 1, 개정 2012. 7.22, 2013. 3. 1)

## 교육 및 활동에 관한 공적서

1. 인적사항

소속 학부(과)		직 위	
생년월일		성명	

2. 교육경력

기간	소속 기관명	경력 년수	비고
. . ~ . .		년 개월	
. . ~ . .		년 개월	
. . ~ . .		년 개월	
. . ~ . .		년 개월	
총 경력 년수		년 개월	

3. 연구활동 업적

구분	제목	발표 년월일	발표기관(지)	비고

4. 상훈(포상) 내역

일자	포상 내용	포상 기관	일자	포상 내용	포상 기관

5. 주요 보직활동

기간	보직명	기간	보직명
. . ~ . .		. . ~ . .	
. . ~ . .		. . ~ . .	

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위원장 (인)

동서울대학교 총장 귀하

## 명예교수 추천 의견서

소속 학부(과)		성 명	
퇴직 당시 직위		정년퇴직 예정일	
근속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 년 개월)		
추천 사유			
상기와 같은 사유로 명예교수를 추천합니다.			
년 월 일			
_____학부(과)장 _____(인)			
<b>동서울대학교 총장 귀하</b>			

【별지 제3호 서식】(신설 2011.10. 1, 개정 2012. 7.22)

## 대학 발전 기여 공적서

### 1. 인적사항

소속 학부(과)		성명	
----------	--	----	--

### 2. 공적 요지

--

### 3. 교육경력

직위	기간	경력년수	비고
조교수	. . ~ . .	년 개월	
부교수	. . ~ . .	년 개월	
교수	. . ~ . .	년 개월	
총 경력년수		년 개월	

### 4. 주요 보직활동

기간	보직명	기간	보직명
. . ~ . .		. . ~ . .	
. . ~ . .		. . ~ . .	

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학부(과)장

(인)

동서울대학교 총장 귀하